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속 5일장’ 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78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 참고자료	
1. 골목형상점가 개요	6
2.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등록, 개신) 신청서 서식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2.
3. 회부연월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Ⅲ. 검토의견

1.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u>구역</u>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 ----- ----- ----- <u>구</u> <u>역 또는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u>

현행	개정안
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 13. (생략)	<u>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u>-----. 3. ~ 13. (현행과 같음)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²⁾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함(참고자료1).

개정안은 기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 외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민속 5일장 등³⁾이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민속 5일장’ 등을 포함하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등 이 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다만, 현행 법령상 골목형상점가는 ‘점포’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속 5일장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고,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포명, 소속 시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등록⁵⁾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참고자료2).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포⁶⁾로 구성되지 않은 일정한 장소를 골목형상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 가. 소속 시장명
- 나. 점포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
- 라. 사업 형태
- 마. 사업장 소재지
- 바. 대표자 성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갱신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행법에는 ‘점포’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법제처는 ‘점포’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해석한 바 있음(출처: 법제처,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법령해석 사례(23-0109, 2023.2.24.)).

점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골목형상점가와 이질적인 형태가 되고,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상점가로서 상행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점포를 운영하면서 각종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상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골목형상점가 개요

- (도입배경) 「전통시장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서 도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 *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
 - **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 점포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
 - * (지원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시장경영패키지지원, 특성화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등
- (지정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2천㎡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곳
 - *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중기부와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통시장법령상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 >

■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정현황) 골목형상점가 359곳 지정 완료('24.12.13. 기준)

* 연도별 지정개수(곳) : ('20) 5 → ('21) 79 → ('22) 119 → ('23) 182 → ('24) 359

